

제 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0월 24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122
- 나. 발 의 자: 한상욱 의원 외 10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10월 13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2.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구민의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되도록 생명존중 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 장소를 지역사회 안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자가 공공 급식소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의 규정 (안 제3조 ~ 제5조)

- 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변경 및 맹견의 관리·조치 사항 (안 제6조, 제7조)
- 라.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감독 규정
(안 제8조 ~ 제15조)
- 마. 생명존중 교육, 반려동물 시설운영 및 동물보호정책 홍보
(안 제16조 ~ 제18조)
- 바. 길고양이의 관리 및 공공 급식소 설치·운영 규정 (안 제19조)
- 사. 보호조치 경비 징수 및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 규정
(안 제20조, 제21조)
- 아. 조례 전체의 상위법령 참조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 다.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0. 16. ~ 10. 2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상위 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시행 2023. 4. 27.)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우리 구 현실을 반영한 조문개정 으로 동물 학대방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전체에서 상위법 개정과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중복규정을 삭제¹⁾하여 입법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 뿐만 아니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에서 기존의 임의규정[할 수 있다]을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여, 피학대동물의 구조 및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올바른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 동물보호윤리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실험동물·농장동물 등 동물 대상별 교육 및 홍보정책사업을 추진
- 동물보호 홍보정책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캠페인 및 교육장소 등에서 홍보용품을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1) 용어의 정의,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의 변경신고 등,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안 제19조에서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 기존에 규정되었던 길고양이 급식소²⁾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관리·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21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 등록수수료 전액 감면대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수료한 경우(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함)”를 추가하였는데
 - 이는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 및 내장형무선식별장치³⁾ 활성화를 통한 유기·유실 반려동물 발생을 감소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는 상위 법인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 잇단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로 「동물보호법」이

2) 우리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현황: 총 5개소 (우장산근린공원 3개소, 방화근린공원 2개소)

3)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동물등록 방법으로, 유기동물의 소유자 확인으로 신속한 소유자 반환 및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동물 학대예방’과 ‘반려동물 관리강화’를 골자로 전부개정⁴⁾(시행 2023. 4. 27.)됨에 따라

-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우리 구 현실과 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⁵⁾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구⁶⁾ 또한 당면한 사항으로
- 동물 유기 및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통해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동반자적인 공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실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역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가. 동물 학대 금지행위 구체화 및 법적 지위 상향 (시행규칙 → 법률)

나. 동물 판매, 수입업, 장묘업 제도 정비 (등록제 → 허가제)

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외출 시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사용, 맹견 출입 금지 지역 확대, 줄에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상의 줄 사용

5) 반려동물 양육비율(가구수): 15% (312.9만 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0)]

6) 강서구 1인가구 비율 37.3%(2022년 말 기준)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유실·유기동물
 -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